

1. 개정이유

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국인투자 인정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이 일부 개정(법률 제16944호, 2020. 2. 4. 공포, 2020. 8. 5. 시행)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신규 제정 및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신설 및 신고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항, 제3항, 별지 제4호의2)

- 1)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됨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
- 2)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신고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함

나. 국유·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규정함.(제9조의2)

- 1) 매수대금 체납 및 사업 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는 매각 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규정함

다.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지원신청서에 현금지원신청 사유를 추가함(별지 제11호의3 서식)

라. 입주계약 체결 후 기간내 공장 건설 등 사업 미착수시 계약 해지
규정함(제16조의2)

- 1) 관리기관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
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지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
운영지침상의 규정을 상향하여 규정

마.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서류인 주주명부를 신규 주식취득시에
도 제출토록하고 변경등록 신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(안
제17조 제1항, 제2항)

바.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서류를 추가하고 서류 제출 시기를
현실에 맞게 변경함(별표1호)

- 1)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외국인투자신고서 신설에 따른 필요서
류(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계획서(요약서 포함), 재무제표에
대한 감사보고서,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, 외국인투자
기업등록증 사본)를 규정함(별표1의 2호. 마목)

- 2)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서류 등의 제출시기를 업무효율성
등 현실에 맞추어 ‘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’에서 ‘외국인
투자신고시’로 개정함(별표1의 2호. 다목의 3, 별표1의 3호. 각목)

사.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의 서식 중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항목을 삭
제하고,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개별 서식에 따르도록 함

- 1) ‘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’ 를 삭제(별지 제1호, 제2호, 제3
호, 제11호의3 및 제17호 서식) 및 ‘⑩금번 외국인투자비용 항목’

삭제(별지 제1호 서식)

- 2)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의 ‘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’,
‘⑧자본금’ 항목은 이미 말소되어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삭제(별지 제18의2 서식)
- 3) 장기차관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의 차관조건을 현실에 맞게 ‘거치기간’을 상환방법으로, ‘상환기간’을 평균차관기간으로 개정함(별지 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라목”을 “마목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: 별지 제4호의2서식

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“라목”을 “마목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: 별지 제4호의2서식

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미처분이익잉여금사용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(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제9조의2(국유·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)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

기간”이란 6개월을 말한다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제16조의2(입주계약 체결 등) 영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
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1년을 말한다”.

제17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
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0
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나. 주주명부(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취득의 경우)

별표 1 제2호다목번호 3)의 제출 시기란 중 “차관자금 송금전까지”를
“외국인투자신고서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마목”을 “바목”로하고, “바
목”을 “사목”으로 한다.

마.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 려는 경우	1)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계획 서(요약서포함) 1부 2)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 3)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 1부 4)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	외국인투자 신고서
---	--	--------------

별표 1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바.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	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

별표 1 제3호 각목의 제출시기 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시까지”를 “외국인투자신고시”로 한다.

3. 출자목적물 관 련 제출서류	가.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·출연 하는 경우	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 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 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 사본 1부	외국인투자 신고서
	나. 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·출연 하는 경우	지점·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 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 본 1부	외국인투자 신고서
	다. 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 의 출자목적물을 출자·출 연하는 경우	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 입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 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책임 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	외국인투자 신고서
	라.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의 출자목적물을 출자·출 연하는 경우	영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(비상장주식을 출자목적 물로 출자·출연하는 경우에 는 국내공인기관의 주식가치 평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, 주식을 출자목적 물로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출자하 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 의 교환조건(교환금액·교환 비율 등)이 명시된 주식양수 (양도) 계약서 사본 1부를 함 께 제출)	외국인투자 신고서

	마. 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 의 출자목적물을 출자· 출연하는 경우	출자·출연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	외국인투자 신고시
	바.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 및 영 제2조제11항의 출 자목적물을 출자·출연하 는 경우	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 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	외국인투자 신고시

(별지 생략)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2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
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
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
가신청을 하려는 자: 다음 각
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
신청서

가.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
· 다목 또는 라목의 외국
인투자를 하려는 경우: 별
지 제3호서식

나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<신설>

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
경우: 별지 제4호의2서식

2. -----

가. -----
----- 마목 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
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
경우: 별지 제4호의2서식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
따른 미처분이익잉여금사용 방
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제①
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무역투자
진흥공사의 장 또는 산업통산자
원부장관(허가를 신청하려는 경
우에 한정한다)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9조의2(국유·공유재산의 매각
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
간)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
외의 부분 단서에서 "산업통

<신 설>	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6개월을 말한다.
제17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)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4.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가. (생 략)	제16조의2(입주계약 체결 등) 영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1년을 말한다 제17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 <u>나.·다.</u> (생 략)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	<u>나. 주주명부(법 제2조제1항 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취득의 경우)</u> <u>다.·라.</u> (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

로부터 <u>30일</u>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·2. (생략) ③ (생략)	----- <u>6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